개정저작권법 시행, 궁금증을 푼다

텍스트 선정에서 번역서 출간까지 실무 저작권 문답

개정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저작권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소급보호 경과조치가 가져다 준 충격완화 장치 때문인지 출판계의 반응은 지난해 개정 저작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보다 많이 차분해진 모습이다. 그러나 법 조항이 워낙 까다롭고 유권해석도 많아 출판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개정법에 대한 궁금증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듯하다. 텍스트를 선정해서 번역서 출간에 이르기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문답을 통해 풀이해 본다. 〈편집자〉

지난 6월 28일 출협강당에서 가진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어떻게 변화돼왔나

우리나라 고유의 저작권법이 시행된 것은 1957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던 이 저작권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한편 1985에 열린 한미통상협상 결과 미국측의 요구로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과 아울러 우리나라가 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세계저작권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 그 결과 1987년 10월 1일부터 UCC의 효력이 국내에 미치기 시작했다. (87년 10월 1일 이후 출간된 저작물에 한해 보호하도록 명시)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 그 결과로 결성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내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이 1995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됨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은 다시 한번 개정된다. 이것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이다. 87년 10월 1일 이전에 출간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저자가 57년 이후 사망했거나 생존해 있다면 저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해주어야 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저작권법의 발효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 소급보호 경과조치로 인해 95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2차저작물(번역, 각색, 영화화)은 허락이나 보상없이 배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배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원저작물의 리프린트물(단순복제)의 경우 95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것은 금년 말까지는 허락이나 보상없이도 배포가 가능하다). 단 95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출판되기 이전의 상태)한 책의 경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출판해도 된다. 2000년 이후에도 출판할 수 있는데, 다만 저작권자의 보상청구가 있으면 보상해주면 된다. 보상기준은 우리나라 관련기관에서 고시한 기준안에 따르면 된다.

——사후 50년 소급보호 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가령, 알베르 까뮈(1913.11.7~1960.1.4)가 1942년에 저술한 《이방인》의 경우, 저작일로부터 저작자의 생존기간 동안 보호되고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방인》의 보호기간은 1942년부터 시작되어 까뮈의 사망 다음해인 61년 1월 1일부터 50년간인 2010년 12월 31일까지다.

2인 이상의 공동저작물은 갑이 먼저 사망하고 을이 최후에 사망하였다면 을의 사망년도 다음해 1월 1일이 기산점이 된다. 만약 저작권자가 공동명의로 돼 있다면 저작물이 공표(출간)된 지 50년 이후까지 소급보호하면 되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만약을 대비해 우리나라 법원에 상당 금액을 공탁하면 문제가 없다.

——표지, 저자의 사진이나 본문 속의 삽화 등도 모두 보호해주어야 하는가.

저작권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책에 수록된 사진이나 삽화에 저작권자가 따로 있으므로 이를 확인,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때, 이들 사진이나 삽화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아닌가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면 다른 출판물에서는 동일한 삽화나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갑 출판사에서는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영어 예문을 번역하고 해설하여 편집, 저작물을 작성했다. 이 출판사에서 원문만을 별도로 복제, 배포했다면 저작권 침해인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화, 제작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 저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그러나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 부터 그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해서만 허락을 받은 것이므로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 배포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되었을 경우 번역, 편집 저작물은 어떻게 되는가.

61년에 사망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갑출판사에서 출판했다. 2011년 후에 원저작의 저작권은 소멸되지만 번역서의 저작권은 그대로 보호된다.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이때 보호기간은 번역완료 시점으로부터 50년간 존속된다. 가령 갑출판사에서 알퐁스 도데의 《꼬마 철학자》를 번역, 출판했는데 원저작이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출판사에서 이를 그대로 복제하여 발간했다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 편집 또는 개작하였다면 그 저작물은 아무런 권리도 얻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원저작과는 별개로 2차저작물로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다만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원저작자의 손해배상 청구나 2차저작물로 얻은 이익금 환수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더욱 크다.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

——원저작물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출간하는 것은 가능한가.

반드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동의없이 출판했을 경우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등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만일 원전에는 없는 삽화를 넣고 싶을 때는 우선 삽화의 저자를 일일이 확인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내용변경과 관련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를 확인하기 힘들 때는 국내 법원에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걸면 문제가 없다.

——저작권 불이행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친고죄를 채택, 피해자가 국내 경찰에 직접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 하도록 했다.

——박남정 기자

* 참고문헌

《출판저작물판례집 100문 100답》(신각철/영재교육사)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김기태/누림) 《문화예술》(1996.5) 《인터넷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국제저작권 조약 체결 동향》(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96 저작권 강연회 주제집)